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6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2.

발 의 자 : 이견태 · 조인철 · 이수진
진선미 · 위성곤 · 황 희
주철현 · 박균택 · 이성운
박지원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.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자길 조성,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어린이 보행안전뿐 아니라,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실제 2023년 기준,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25.7% 수준으로 어린이(7.9%) 대비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과 재정투자가 시급한 실정임.

이에 개정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, 현

행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,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9조제2항).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대통령령”을 “이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경우 등 대통령령”으로, “제1호”를 “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구역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	제9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(이하 “보행환경개선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보행환 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<u>대통령령</u>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제1호</u> 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 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</u> <u>된 경우 등 대통령령</u> ----- ----- <u>제1호 및</u> <u>제2호</u>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